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2. 11 선고 2019가단41 판결 [(일부판결)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 합자회사

변 론 종 결 2021. 11. 12.

판 결 선 고 2022. 2. 11.

주 문

1.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21. 5. 4.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.
2.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공동피고 C은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E호, F호 채권에 관한 채권을 공동피고 G에게 양도하고
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라.

이 유

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제1차 변론기일(2021. 3. 5. 15:20) 및 제2차 변론기일(2021. 4.
2. 14:30) 각 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, 원고가 2021. 5. 28.

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.

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바(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, 제2항)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와 피고가 제1차 변론기일 및 제2차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였고,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21. 5. 4.(1개월의 말일인 2021. 5. 2.이 일요일이므로 1개월 경과일은 위와 같다) 소취하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.

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다.

판사 유지현